

참고 거리두기 1.5단계 및 2단계 조치사항 (요약)

□ 다중이용시설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
중점관리시설	▲ (공통)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		
유흥시설 5종 (클럽 헌팅포차 등)	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	▲ <u>출퇴기 금지,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</u>	▲ <u>집합금지</u>
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	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▲ 노래, 음식 제공 금지	▲ <u>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</u>	▲ <u>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강화</u> 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
노래연습장	▲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하고 30분 후 사용	▲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</u> ▲ <u>음식 섭취 금지 추가</u>	▲ <u>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</u>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실내 스탠딩 공연장	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	▲ <u>음식 섭취 금지 추가</u>	▲ <u>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</u> ▲ <u>스탠딩금지, 좌석간 1m 거리두기 추가</u>
식당·카페	▲ 150㎡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, ② 좌석 / 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	▲ <u>수칙은 동일, 50㎡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</u>	▲ (식당) <u>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추가</u> ▲ (식당) 50㎡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▲ (카페) <u>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</u>
일반관리시설			
실내체육시설	▲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	▲ <u>음식 섭취 금지 추가</u>	▲ <u>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</u>
결혼식장	▲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	▲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</u>	▲ <u>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</u>
장례식장		▲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</u>	▲ <u>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강화</u> ▲ <u>음식 섭취 금지 추가</u>
목욕장업		▲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</u>	▲ <u>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</u>
영화관		▲ <u>다른 일행 간 띄워</u>	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
공연장	PC방	▲ <u>앉기 추가</u>	▲ <u>음식 섭취 금지</u>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	▲ <u>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</u>	▲ <u>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</u>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 <u>음식 섭취 금지</u>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학원·직업훈련기관		▲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</u>	▲ <u>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강화</u> ▲ <u>음식 섭취 금지</u>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스터디카페	▲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	▲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</u>	▲ <u>음식 섭취 금지</u>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▲ <u>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/u> ① <u>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u> ②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</u>
놀이공원·워터파크		▲ <u>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</u>	▲ <u>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</u>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 <u>음식 섭취 금지</u>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▲ <u>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</u>
아·미용업		▲ <u>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</u> ▲ <u>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</u>	▲ <u>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강화</u> ▲ <u>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</u>
상점·마트·백화점	▲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	▲ 추가 수칙 없음	
국공립시설	▲ 경륜·경마 등 50% 인원 제한	▲ <u>경륜·경마 등 20% 인원 제한</u> ▲ <u>이외 시설 50% 인원</u>	▲ <u>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</u> ▲ <u>이외 시설 30% 인원</u>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
		제한	제한 강화
사회복지시설	▲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		

□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▲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시위장, 실내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사업장, 종교시설	▲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	▲ 실내 전체, 실외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
모임·행사	▲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	▲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,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	▲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▲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에는 4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
스포츠 관람	▲ 50% 이내로 관중 입장	▲ 30% 이내로 관중 입장	▲ 1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▲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	▲ 밀집도 2/3 준수	▲ 밀집도 1/3(고교는 2/3) 원칙, 조정 가능
종교활동	▲ 좌석 한 칸 띄우기 ▲ 모임·식사 자제 권고(숙박행사 금지)	▲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% 이내로 제한 ▲ 모임·식사 금지	▲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% 이내로 제한 ▲ 모임·식사 금지
직장근무	▲ 기관·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(예: 1/5 수준) ▲ 콜센터·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	▲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(예: 1/3 수준) ▲ 콜센터·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환기·소독 의무화	